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719호

나. 발 의 자 : 유형찬 의원

다. 발의일자 : 2025년 5월 23일

라.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II.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유치원도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의 대상에 포함시켜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시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동등한 안전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III. 주요내용

- “학교”의 정의에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

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3. 입법예고 : 2025. 6. 3. ~ 6. 7.(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3일 우형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719호로 발의되어 2025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에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포함시켜 서울시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동등한 안전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현행 조례는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보다 안전하게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 조례 제정 이후 강원도 소재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인솔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¹⁾ 계기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²⁾) 및 동 조례³⁾가 개정되어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

1)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 유죄...주의의무 위반 과실 형사책임(연합뉴스TV, 2025.2.11.)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4. 12. 20., 일부개정]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⑤ 학교장 및 교직원 등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3)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5. 3. 7., 일부개정]

제5조(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

6.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보조인력 배치) ① 학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그러나 「학교안전법」과는 달리, 현행 조례는 ‘학교’의 정의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만 한정하고 유치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⁴⁾

[표-1] 「학교안전법」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교안전법」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1.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등 유치원 교육과정(Ⅰ.신체운동·건강, Ⅱ.의사소통, Ⅲ.사회관계, Ⅳ.예술경험, Ⅴ.자연탐구)의 특성상 학교보다 현장체험학습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빈도 또한 높은 실정입니다.

②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을 보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에 유치원이 빠졌다(파이낸셜뉴스, 2025.4.11.)

[표-2] 2022~2024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실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⁵⁾

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전사고 발생	
	설립별	유치원 수	실시 유치원 수	실시횟수	사고건수	비고
2022	공립	292	166	531	4	개인부상 34건
	사립	472	401	9,046	30	
2023	공립	294	255	1,091	3	개인부상 23건
	사립	456	414	11,979	20	
2024	공립	293	278	1,293	3	개인부상 30건
	사립	441	412	12,983	27	

- 물론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지침⁶⁾을 초·중등학교와 동일하게 유치원에도 안내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유치원을 적용 대상에 제외하고 있어, 보조인력 배치 등 「학교안전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유치원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유치원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실제적 지도·감독 대상 기관인 유치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6864, 2025. 6. 4.).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명신(2180-8269)
----------	----------------	-------	----------------

5)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1063번)'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5222, 2025.6.2.)

6) 2025학년도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체육건강예술교육과 발행, 2025.2.21.)

관 계 법 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삭제 <2019. 12. 3.>

② 삭제 <2019. 12. 3.>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2. 20.>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